

4.2.14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제정 2010. 11. 29.

개정 2020. 02. 28.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초당학원정관 제78조 제3항 및 교원임용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특별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8.>

제2조(심사방법)교원임용규정 제16조가 규정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0.02.28.>

제3조(자격) 교원임용규정 제19조제1항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술업적(연구 및 교육)과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
2.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술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인을 받은 자
3. 전공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 실무능력, 독보적 기술·기능을 보유한 자(학위소지 여부에 상관없음)
4. 외국인 중 교수능력 또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자
5. 재외 한국인 학자

제4조(위원회) 교원임용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는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서 실시하며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교무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면접심사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면접시험의 실시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제6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제16조 결격사유와 제3조 각 호의 특별채용 요건에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7조(면접심사) 교원으로서의 국가관, 인격과 덕망, 학교발전기여 가능성, 지도력등 종합적으로 <별첨 1>에 의해 심사하며, 최고점수의 80%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면접심사위원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A : 20점~18점, B : 17점~15점, C : 14점~12점, D : 11점 이하
2. 위원 A : 15점~13점, B : 12점~10점, C : 9점~7점, D : 6점 이하

제8조(임용절차) 총장은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심사결과 서류전형에서 통과되고 면접심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있을 때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면접심사카드

지원 학과		채용 분야		생 년 월 일		성 명	
----------	--	----------	--	------------------	--	--------	--

학 력				
주요경력				
심사의견				
심 사 자 평 가 표	A 위원장(20~18) 위원(15~13)	B (17~15) (12~10)	C (14~12) (9~7)	D (11점 이하) (6점 이하)
비 고	국가관, 인격과 덕망, 학교발전기여 가능성, 지도력 등을 참작			
* 심사평가 결과를 상기 평가표의 해당란에 배점을 부여.				
년 월 일				
면접위원	직명 :		성 명 :	(인)

초당대학교총장 귀하